

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|---|
| <p>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협회” 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라 한다.</p> | <p>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재단” 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라 한다.</p> |
| <p>제25조(기부금 공개)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cfs.co.kr)를 통하여 공개한다.</p> | <p>제25조(기부금 공개)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cfs.co.kr)를 통하여 공개한다.</p> |